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91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911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5227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변론 종결 2024. 8. 30.

판결 선고 2024. 12. 1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5227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1.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1. 10. 12. 접수 제1691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2.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2. 9. 28. 접수 제1369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28. B와 보증원금 1,900만 원, 보증기한 2026. 1. 2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는 같은 날 주식회사 C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위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21. 1. 29.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22. 9. 1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2. 12.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17.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2021. 10.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1/2 지분에 관하여 제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2. 9.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제2 증여계약'이라고 하고, 제1, 2 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 28. 피고에게 위 1/2 지분에 관하여 제2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B와 1996. 11. 1. 혼인신고를 한 후 2022. 11. 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각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무렵 B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제1 증여계약에 관하여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앞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192,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19,625,280원
D아파트 E호	92,000,000원	F은행에 대한 채무	121,964,000원
		I에 대한 채무	28,525,000원
		J카드에 대한 채무	987,000원
		K카드에 대한 채무	400,000원
		L카드에 대한 채무	7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192,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19,625,280원
		M조합에 대한 채무	1,980,000원
		D아파트 E호 임대보증금	90,000,000원
합계	284,000,000원		264,181,280원

B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제1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위 증여계약이 있는 후 1년이나 경과한 2022. 11. 1.경에서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위 증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제1 증여계약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인 점, ③ B는 위 증여계약 당시 폐업 및 다수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는 제1 증여계약이 있는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만일 제1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증여계약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제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증여계약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2) 제2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는 제2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2022. 11. 1.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증여계약과 협의이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한 점, 당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외에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는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제2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벗어난 것인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고, B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1) 제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제2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92,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19,625,280원
D아파트 E호	92,000,000원	F은행에 대한 채무	119,487,000원
		I에 대한 채무	4,950,0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국세청 체납액	5,000,000원
		D아파트 E호 임대보증금	90,000,000원
합계	284,000,000원		249,062,280원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B와 피고는 1996. 11. 1. 혼인신고를 하여 2022. 11. 1. 협의이혼신고를 하기까지 약 26년을 혼인생활을 하였고, B와 피고 사이에는 성년의 자녀가 둘이 있다. B의 채무는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 또는 사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가 약 26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제2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9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위 부동산에는 위 소극재산 중 F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피고는 B와 이혼한 후에도 B 명의 계좌로 매달 7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면서 위 피담보채무를 갚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득은 위 가액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제2 증여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제1 증여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B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김경중

판사이지영

별지

1) 제1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제2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